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강민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44

발의연월일: 2020. 9. 16.

발 의 자: 강민정・남인순・이수진(비)

이은주 · 최강욱 · 이수진

이규민 · 심상정 · 류호정

강은미ㆍ허종식ㆍ정춘숙

이용우 · 신현영 의원

(14인)

제안이유

교육은 백년 후까지를 내다봐야 하는 동시에 치열한 국제경쟁 사회에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차대한 영역임.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철학과 기조가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제도 역시 수시로 급변함으로써 사회적 혼란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이로 인해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 주체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 커지고 있고 정부 당국의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이러한 혼란을 사전 예방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독립기구 마련이 필 요한 상황에 이르렀음. 이에 정권과 정파를 초월하여 독립성을 유지하 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주요내용

- 가.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위원회는 미래사회 대비 국가교육 비전 및 중장기 계획 수립, 교육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의 사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률상 독립기구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둠(안제2조).
- 다. 위원회의 위원은 전·현직 교원, 교육 관련 전공자, 교육 관련 유경력 공무원, 교육 관련 단체·기관 대표나 임직원, 기타 교육발전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임명하되, 각 조건에 따라 추천된 사람이 전체의 5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며, 대통령과 국회 추천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 위원을 각 1명 이상씩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또한,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가 추천하는 7명(상임위원 2명 포함, 교섭단체 추천 6명, 비교섭단체 추천 1명), 교육부차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1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원단체로부터 추천받은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

회로부터 각각 추천받은 2명, 지방자치단체 추천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함(안제3조).

- 라.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 소관 사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하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음(안 제4조).
- 마. 국가교육위원회는 독립성과 중장기 교육 방향 수립을 위한 기구임.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성원리가 특별히 중요함. 이에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독립성과 위원회 업무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제외하고 최초로 임명되는 위원에 한하여 위원의 임기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은 2년, 전체 위원의 3분의 1은 4년, 나머지 위원은 6년으로 추첨에 의해 정함(안 제5조).
- 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직선 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은 재직 중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를 할 수 없음(안 제7조 및 제8조).
- 사.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 의제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 수 있고, 학생·학부모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한 국민참여위원회를 두어야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아. 위원회는 미래사회 대비 국가교육 비전 및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인재개발정책, 교육과정의 연구·개발·고시에 관한 사항, 교육과 지역사회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 사무로 함(안 제12조).
- 자.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하며,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전년도의 실적과 다음연도의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함(안 제13조).
- 차. 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을 고시하고 조사, 분석 및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음(안 제14조).
- 카. 대통령, 국회,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인원 이상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가 국민 의견을 수렴·조정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함(안 제15조).
- 타.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

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 방자치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협의체를 둘 수 있음(안 제16조).

- 파. 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둠(안 제18조 및 제19조).
- 하. 위원회의 소관 사무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연구센터를 설치하거나 교육정책 관련 연구기관 등을 교육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20조).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합의를 토대로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제2조(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미래사회 국가교육 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과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 발전계획 수립 등의 사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업무를 공정

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분의 1을 넘지 아니하도록 임명하여야 한다.

- 1. 유・초・중・고교 교원으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교육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 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3. 교육 또는 교육 관련 분야에 관한 경력이 있는 3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 교육·언론·고용·산업·복지·과학기술 또는 그 밖의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5. 그 밖에 국가 교육발전을 위한 전문성과 지식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③ 위원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 1.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 2. 국회가 추천하는 7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하며, 교섭단체는 6명, 비교섭단체는 1명으로 한다)
- 3. 교육부차관
-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

체의 대표자 1명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원단체로부터 추천받은 2명
- 6.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각각 추천받은 2명
- 7.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명
- ④ 대통령과 국회는 교육 단체, 학부모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교육 발전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 위원을 각 1명 이상씩 지명·추천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⑥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⑦ 그 밖에 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 및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위원장을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되, 최초로 임명되는 위원에 한하여 그 임기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은 2년, 전체 위원의 3분의 1은 4년, 나머지 위원은 6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제외하고 추첨으로 정한다.
- 제6조(신분보장) ①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외부의 부당한 지시 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1. 장기(長期)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제7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 이 법 또는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제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 제8조(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모든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12조의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검 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교육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다.
 - ③ 그 밖에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국민참여위원회) ① 위원회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학생·학부

모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교육정책 수립을 위하여 국민참여위원회를 둔다.

② 그 밖에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12조(소관 사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 1. 국가의 교육 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수립에 관한 사항
- 3. 교육정책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의결로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교육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시·자치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등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및 교육·연구기관 및 교육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국가교육과정에 대해 조사·분석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제 2항에 따른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 을 거쳐 수정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발전계획 또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따라야 한다. 심의 결과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전년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⑧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발전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⑨ 그 밖에 발전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 수립 등) ① 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운영하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국가교육과정에 대해 조사·분석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① 제12조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정책에 대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조정할 수 있다.
 - 1. 대통령, 국회,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인원 이상의 국민 요청이 있는 경우
 - 3. 위원회가 국민 의견을 수렴·조정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청을 받는 경우 국민 의견 수렴·조정 절차에 대한 진행 여부를 요청기관 등에 알려야

하고,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요청기관 등에 통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그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정책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하며, 심의 결과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협의체를 둘 수 있다.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운영 등

-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단독으로 소집하거나 4분의 1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 보존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제18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전문위 원을 둘 수 있다.
 - ② 전문위원은 교육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9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고위공무원으로 보한다.
 -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인사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교육연구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①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소관 사무의 수행을 지원하게하기 위하여 교육연구센터를 설치하거나 교육정책 관련 연구기관등을 교육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연구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1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소속 공 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한 사람에 대한 인사 ·처우 등의 우대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22조(수당 등) 위원·전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 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 지 아니하다.
- 제23조(운영규칙의 제정) 이 법률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임명, 이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공포 등 위원회의 설립 관련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받은 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 제4조(기능조정에 따른 소관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교육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제12조제1항의 사무는 이 법에 따 른 위원회가 승계한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교육부장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에 교육부장관의 행위와 교육부장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 중 그 소관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원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위원회의 행위 또는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의4제3항 중 "교육부장관"을 "국가교육위원회"로 한다.
 - ②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교육부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③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육부장관은"을 "교육부장관 또는 국가교육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육부장관은"을 "교육부장관 또는 국가교육위원회는"으로 한다.

④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과"를 "국가교육위원회와"로 한다.

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장과"를 "장(국가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과"로, "교육부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⑥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에게"를 "국가교육위원회에"로 한다.

⑦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의 "교육부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⑧ 진로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부장관은"을 "국가교육위원회는"으로, "교육부

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부장 관과"를 "국가교육위원회와"로 한다.

⑨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국가교육위원회"로 한다.

①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국가교육위원회는"으로, "교육부장 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 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①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교육과정 및 방과후"를 각각 "방과후"로 한다.

-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있다.
- 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교육부렁으로"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교육부"를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로 한다.